



보도	배포시	배포	2023.7.17.(월)		
담당부서	공시심사실 공시심사2팀	책임자	실 장	오상완	(02-3145-8420)
		담당자	부국장	김대범	(02-3145-8456)

(주)틸론 IPO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실시 관련 설명

- **(정정요구)** '23.7.17. 금융감독원은 (주)틸론(이하 '회사')의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 이에 회사가 '23.7.3.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정정요구일로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동법 제122조 제2항)되고, 새로운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그 날부터 수리되어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재기산됩니다.

정정요구 주요내용

① 대법원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한 원심파기 환송 결정에 따른 영향

'23.7.13. 대법원이 회사가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주)뉴옵틱스가 제기한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해 원심파기 환송 결정을 함에 따라 회사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23.7.13. 공시기준 원고 소가 43.8억원, '23.1분기 자기자본 13.8억원)

→ ①회사의 최대 손실 추정액, ②현재 인식하고 있는 당해 소송 관련 총당부채, ③현재 인식된 총당부채를 초과하는 손실 추정액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 등

② 회사와 대표이사간 대여금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명확히 기재

- 대표이사의 대여금 거래 중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내역이 업무상 횡령에도 해당될 소지 및 관련 법률 검토내용

- 제5회차 CB의 인수자(주)농심캐피탈)가 '21.6.월 CB 상환행사 요청이 있어 동 CB의 50%인 5억원을 대표이사가 불가피하게 인수하게 되었다고 기재하였으나,

→ (주)농심캐피탈이 조기상환 청구 없이 보유하고 있던 CB(5억원)를 보통주로 전환한 경위 및 시기 등

- **(정정요구 배경)** 금번 정정신고서 제출요구는 대법원 결정에 따른 중대한 재무구조 악화 등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 투자자가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투자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이에 투자자는 동 정정요구에 따라 제출될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과 향후 공모일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향후 심사방안)** 금번 사례는 지난 '23.7.6. 발표한 IPO증권신고서 심사방안 중 투자자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건에 대한 중점심사 방침의 일환입니다.
 - 그 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출 후 1주일 내 집중심사 등을 통해 일정변경을 최소화하는 신속심사 방침을 적용하는 한편
 -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금융위·거래소 등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력하는 등 건전한 기업이 직접금융 시장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